전자 금융 거래 이용 약관

제 1장 총칭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미스터팍 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미팍 간편결제, 보험료납부등 앱서비스(이하 '앱')를 통하여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관리 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'전자금융거래서비스')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제 2 조 (정의)

- 1.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'전자금융거래'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- 2. '전자지급거래'는 자금을 주는 자(이하 '지급인'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'수취인'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 - 3. '전자적 장치'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,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 - 4. '접근매체'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'전자서명법'상의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 - 5. '이용자'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파트너스 및 일반 이용자 회원을 말합니다.
 - 6. '이용자 ID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- 7. '비밀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8. '거래지시'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9. '오류'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.
- 2.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- 1.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2.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- 3.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('미팍 app 및 홈페이지'를 말합니다. 이하에서 같습니다)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.
- 4. 회사는 제 3 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
제 4 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1. 회사는 '미팍'의 '마이 페이지'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- 2. 제 1 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 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거래의 종류 및 금액
 - 2.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
- 3. 거래일자
- 4.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5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- 6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- 7. 전자금융거래법 제 15조 제 1 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- 8.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- 3. 제 1 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 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 - 2.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 - 3.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- 4.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1.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5(유호엔시티 201 동 116호)
 - 2. 이메일(E-mail) 주소: jisub00@naver.com
 - 3. 전화번호: 02-1899-1871

제 5 조 (오류의 정정 등)

- 1.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2.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리며,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.

제 6 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
- 1.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2.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 4 조 제 2 항, 제 3 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제 7 조 (거래지시의 철회 등)

1.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4 조 제 4 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5 조와 제 20 조, 제 26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
2.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3 자에게 제공•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 9 조 (회사의 책임)

- 1.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2.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 - 1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,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- 2.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
- 3.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,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 (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)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4.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.

제 10 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- 1. 이용자는 회사의 앱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,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2.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3.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'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' 제 51 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'소비자기본법'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.

제 12 조 (약관 외 준칙)

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은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제 13 조 (관할)
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(포인트)

제 14 조 (정의)

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선불전자지급수단은 '포인트'와 같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,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- 2. '적립포인트'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 다만, 제 25 조의 2 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3. '이용자'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'포인트'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4. '판매자'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'포인트'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5. 본 장에서 '접근매체'란 '포인트'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ID, 비밀번호,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.

제 15 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- 1.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'포인트'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2. 제 2 장 결제대행서비스 제 1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은 본 장 선불 전자지급수단('포인트')에 준용합니다.

제 16 조 (환급 등)

- 1.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'포인트'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2.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'포인트'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과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기한과 이용방법은 '포인트'가 발행되었을 때의 공지내용과 앱 내 '나의 메뉴', '고객센터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 18 조 (포인트 환수 및 마이너스 포인트 처리)

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'포인트'는 해당 구매가 취소되면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제 19 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- 1.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2.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

제 20 조 (준용규정)

제 2 장 결제대행서비스 제 16 조는 본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.

제3장 보험사용료의 충전

제 21 조 (정의)

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"보험료" 란 사전 충전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미팍 제휴 단체 주차장보험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뜻합니다.(보험료 : 실보험료 + (서버 및 결제) 시스템 사용료로 구성)

- 1. 보험료 충전은 당사가 제공하는 미팍 제휴 단체 주차장보험을 가입 및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계좌에 가상계좌 등을 사용하여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사전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
 - 1. 충전된 보험료가 부족한면 5만원부터 사전에 알려 충전 시기를 안내하며 파트너스 충전액이 0원이 될 경우에는 입출차 기능 사용이 불가 합니다.
 - 2. 충전된 보험료는"파트너스" 가 추가한 모든 주차사업장의 비용이 한번에 정산출금 됩니다.
 - 3. "파트너스" 해지 시에 모든 비용이 14일 이내 정산되며 "회사"가 정산 받아야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전된 보험료를 사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.
- 2.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파트너스는 보험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아도 기능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.

제 4 장 결제대행 수수료

제 21 조 (정의)

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"결제대행수수료" 란 이용객이 간편결제를 통하여 서비스요금을 결제한 경우 파트너스가 부담하는 일종의 카드결제 수수료

(미팍 결제대행수수료 4% : pq 사 수수료 2~3% + 당사시스템 사용료 1%)

- 1. 주차장 고객이 당사 앱을 통하여 결제한 경우 결제대금에서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지정계좌에 입금
- 2. "파트너스" 해지 시에 모든 비용이 15일 이내 정산되며 "회사"가 정산 받아야할

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전된 보험료를 사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.

3. pg 사 수수료 상승시에 당사 수수료도 인상될 수 있으며 [3 조] 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지합니다.

본 약관은 2022 년 0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